

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

※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즉시
신청인	상호 또는 법인 명		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 성명		생년월일
	업종		
	사업장 또는 본점 소재지		

1. 당기분 공제대상세액 계산 (단위: 원)

신청내용	과세연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	공제세액 계산	① 성실신고확인비용
		② 공제가능액(① × 60/100)
		③ 공제한도액
		④ 당기분 공제대상 세액(② 또는 ③ 중 적은 금액)

2. 당기 공제세액(=⑮): 원 (단위: 원)

과세연도	⑤ 당기분 (=④)	공제 대상세액 이월분					⑮ 계 (⑤+⑥+⑦+ ⑧+⑨+⑩+⑪+ ⑫+⑬+⑭+⑮)	⑯ 결손 등 사유로 미공제액	⑰ 공제 세액 (⑮- ⑯)	⑱ 소멸	이월액 (⑮-⑰)
		⑥1차연도	⑦2차연도	⑧3차연도	⑨4차연도	⑩5차연도					
		⑪6차연도	⑫7차연도	⑬8차연도	⑭9차연도	⑮10차연도					
합계										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21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신청인
세무서장 귀하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- 1. 이 서식은 거주자별로 작성합니다.
- 2. "① 성실신고확인비용"란은 세무사 등 성실신고 확인자에게 실제 지급한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적습니다.
- 3. "③ 공제한도액" 란은 다음의 금액을 적용합니다.
 - 「소득세법」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: 120만원
 - 「법인세법」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 : 150만원